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요강

제 정 : 2020. 12. 3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 탐지, 조사하고 공사의 부패방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1. 외부 및 내부 경영환경
2.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3. 부패리스크 평가 결과

② 공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본사 기준으로 운영, 관리하며, 국내외지사도 본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용한다.

③ 공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알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성희롱, 갑질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부패방지준수책임관 및 담당부서) 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공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이하 “ISO 37001 표준”)에 충족되도록 관리하고,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윤리경영 총괄담당 부서장이 부패방지 준수책임관이 된다.

② “부패방지주관부서”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윤리경영 총괄담당 부서가 된다.

제4조(부패방지 경영환경 파악)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실행·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주요 경영환경을 파악한다.

제5조(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해)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공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제6조(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및 개선) 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부패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부패를 예방·탐지하는 등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다.

②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2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체계

제7조(부패방지경영헌장) ① 사장은 ISO 37001 표준 준수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헌장을 별표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부패방지경영헌장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제8조(역할과 책임) ① 윤리경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주요 윤리경영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의 윤리경영위원회 기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1. 부패방지 경영헌장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사항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1. 부패방지경영헌장 제정 및 윤리경영위원회 보고
2. 부패방지준수책임관 임명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지원

③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실행·준수를 총괄한다.

④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제3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계획

제9조(부패리스크평가) 공사는 부패리스크평가를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제10조(부패방지업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공사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패방지경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제4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지원

제11조(부패방지 역량 및 교육) 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임직원의 부패방지 관련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결정한다.

②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임직원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방지경영 실무협의체 운영) 부패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윤리경영 총괄담당 본부장이 정한다.

## 제5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제13조(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관리 및 유지한다.

## 제6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평가

제14조(운영성과평가)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1. 현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제15조(내부심사) 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연1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를 실시한다.

② 내부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규의 준수 여부 확인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실질적 운영여부 확인

제16조(결과 보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 결과를 연 1회 윤리경영 총괄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부 칙 (제정)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부패방지경영헌장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고객과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 국제표준 요구사항 및 내규를 준수한다.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 부패행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신고자의 신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2020. 12. 31.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